

〈전라남도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 해지 사유 및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기준〉

구분	해지사유	해지환급금 수급권자 및 비율		
		근로자 적립금	기업 지원금	정부 자치단체 지원금
만기해지	▶ 최초 가입일부터 만기까지 계약을 유지한 경우	근로자 (100%)	근로자 (100%)	근로자 (100%)
기업 귀책	원청사 귀책	근로자 (100%)	근로자 (50%)	근로자 (50%)
	▶ 원청사의 휴폐업 부도, 해산			
	▶ 기업지원금을 3회 초과하여 미납한 경우			
	사내협력사 귀책*	근로자 (100%)	근로자 (0%)	근로자 (0%)
▶ 협력사의 휴폐업 부도, 해산 원청과 계약종료				
▶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				
근로자 귀책	▶ 근로자의 계약 취소	근로자 (100%)	근로자 (0%)	근로자 (0%)
	▶ 만기일 이전에 타 자치단체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			
	▶ 근로자의 퇴직(창업·학업·자발적 이직·기타 사유)			
	▶ 근로자의 배임·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된 자			
	▶ 근로자 적립금을 3회를 초과하여 미납한자			
	▶ 기타			
기타	▶ 업무상 사망,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	근로자 (100%)	근로자 (100%)	근로자 (100%)
	▶ 근로자의 육아 휴직으로 인한 중도해지	근로자 (100%)	근로자 (0%)	근로자 (0%)
	▶ 부정수급	근로자 (100%)	근로자 (0%)	근로자 (0%)

* 비자발적인 이직(협력사 폐업, 원청사와 계약 종료 등) 사유 중 사내협력사 간 고용 승계로 인한 이직 근로자는 가입 유지(단, 고용보험 공백일이 없이 승계한 경우만 해당)

** 근로자 적립금은 해지 신청일까지 적립된 금액의 100% 전액 환급

*** 지원금(기업, 정부, 자치단체)은 해지 신청일 기준 해지 환급금 비율에 따라 지급